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허용〉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6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2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25.
- (3) 회 부 일 : 2024.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위기 극복 및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군·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 및 제41조).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애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 ----- ----- ----- -----제33조제2항 및 제3항----- ----- -----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생략)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② ----- ----- ----- -----하 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현행	개정안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41조(위임·위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각각 중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1개소)와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직영인 인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는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임(참고자료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현황).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 다만, 시·군·구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¹⁾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평가에 관한 업무

②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평가에 관한 업무

□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군·구에서의 수요자 접근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②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③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④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⑤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⑥ 발달장

1)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시·도’로 개정되었음.

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⑦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⑧ 후견인 선임 전 보호자에 대한 감독, ⑨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⑩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권리구제 지원 등으로(「발달장애인법」 제34조제2항),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지원·홍보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모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를 구분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시·도지사가 시·군·구에도 센터를 두거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시·군·구 스스로 센터를 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합쳐서 센터를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시·군·구에는 센터를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는 반대 논거로도 해석될 수 있는바, 시·군·구에도 센터 설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²⁾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 1의2.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우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³⁾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없는 상황임.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서비스 연계 등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필요성에 공감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설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문 의 처

02)6788-5502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지원 예산 (국비/지방비)	운영주체
중앙	1,300,000 /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326,000 / 326,000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	357,280 / 357,280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	338,780 / 338,780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광역시	292,580 / 292,580	인천광역시 직영
광주광역시	326,190 / 326,190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	296,190 / 296,190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	244,000 / 244,000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	163,000 / 163,000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356,890 / 356,890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특별자치도	287,000 / 287,000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	304,780 / 304,780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	274,000 / 274,000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	277,810 / 277,810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남도	291,670 / 291,670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북도	320,000 / 320,000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남도	341,010 / 341,010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250,000 / 250,000	한국장애인개발원
계	6,347,180 / 5,047,180	-

주 1): 2024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